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1가단3495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항
변 론 종 결 2022. 12. 21.
판 결 선 고 2023.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0. 4. 9.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0. 9. 7. 접수 제1572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360084)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2016. 10. 6. ‘C은 원고에게 5,322,71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12. 4.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망 D이 2020. 4. 9.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피고, C을 포함한 자녀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피고, C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9.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당시 유일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2/13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고, 그 이후 현재까지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여부

1) C은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2/13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주기로 하는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C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의 선의의 수익자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망 D은 피고와 혼인한 이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고, 피고가 노점상을 하여 얻은 수익금을 모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을 통해 자신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C에게 어떠한 채무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당시 원고를 해할 의사는 없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을 할 당시 원고를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망 D과 피고는 1975년경 혼인하였는데, 망 D은 혼인기간 동안 몇 달간 공공근로를 한 것 외에는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가 5남매를 키워오면서 1985년경부터 현재까지 야채장사를 하며 가족을 부양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7. 14. 망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위와 같이 피고가 장사를 하여 가족들을 부양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 및 대출금 변제는 모두 피고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원금이 500만 원 가량으로 그 액수가 크지 않고, C은 이미 장성한 자녀로써 부모와 경제생활을 함께 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가 C이 부담하는 채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④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망 D으로부터 상속한 별다른 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⑤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하여 남은 일방에게 부부가 상당한 기간 동안 거주하던 집을 단독상속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통념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일생동안 가족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등의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이러한 재산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유지, 가족에 대한 헌신 등에 대한 보상, 노모의 남은 여생 동안의 거주 보장 등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희

별지